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1995.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응시수수료 20,000원으로는 동 시험경비를 확보할 수 없어 교육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 및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동 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인당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되, 실기과목 응시자는 35,000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 개정근거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교육부령 제661호, 1995.6.8.)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자료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중등교원 임용시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인당 20,000원"을 "1인당 25,000원(단, 실기과목 응시자는 3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